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 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II. 검토의견

- 안 제39조제1항의 취지는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¹⁾에 따라 연금인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와 안 제39조제1항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안 제39조제1항과 같이 규정할 경우 연금인 급여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당초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9조제1항 문구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를 추가하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u>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u>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u>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1.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u> 2. <u>「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u> 3. <u>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u>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구분하고 호를 신설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김 성 완)